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모집공고

「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」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□ **공모직위:** 이사장

□ **주요직무:**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 총괄 및 경영성과에 책임

-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·유지
-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
-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
-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·결정
-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(병원, 케어센터 등)의 설치·운영 및 수반된 사업
-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·요양·재활 및 수반된 사업
-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·검정·보급 및 수반된 사업
- 보험급여 결정·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및 수반된 사업
-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및 수반된 사업
-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수반된 사업
-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수반된 사업

□ **임명기간:** 3년 (최초임기 만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)

□ **자격요건**

포괄적 자격요건			○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 ○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○ 조직관리, 경영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자 ○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○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
필수요건			○ 다음 임원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)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4조(결격사유) - 「근로복지공단 정관」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)
구체적 요건	학력 기준		○ 박사학위 소지자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○ 석사학위 이하인 자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
	경력 기준	공무원	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구 체 적 요 건	경력 기준	민간 경력	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실적기준		○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

※ **구체적요건**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

※ **민간경력**은 산하단체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민간기업(비상장 포함),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(프리랜서 등)을 포함

※ **관련분야**라 함은 노동·산업관련 복지, 행정 경영 조직 인사관리 및 의료사업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

※ 해당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지원 불가

<필수요건-결격사유>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□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: 2023. 3. 6.(월) ~ 2023. 3. 15.(수) 18:00 (토·일요일 제외)
- 접수장소: (4442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사운영부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(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※ 접수기간 중 토·일요일은 접수 불가, 등기우편 접수 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가능

□ 제출서류

-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) 각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소정양식) 각 1부
- 경력증명서·최종학력증명서(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)·학위 논문 요약서 (10쪽 이내) 각 1부
- 구체적인 자격요건 중 실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실적 증빙자료 제출
※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양식은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(www.gojobs.go.kr),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,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www.mogef.go.kr),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(www.alio.go.kr) 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

□ 심사절차 및 방법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
 - 서류심사: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·평가
 - 면접심사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
- ※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□ 보수

- 「보수규정」 등 공단 내규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 증명서 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(052-704-7042, 704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3월 6일

근로복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